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전현희·민병덕·박지원

복기왕 · 정준호 · 김동아

맹성규 · 윤종오 · 고민정

김영배 • 주철현 • 이학영

박희승 • 백승아 • 양부남

이광희 • 박용갑 • 손명수

한준호 · 임미애 · 김 유

신정훈 · 문금주 · 서미화

이재강 • 서영석 • 강유정

이병진 • 이상식 • 강선우

황유하 • 박해철 • 이정헌

김영환 • 박선원 • 윤후덕

이용우 • 황명선 • 송재봉

최민희 • 황정아 • 이수진

양문석 • 신영대 • 문대림

박홍배 · 차규근 · 한창민

노종면 · 김 현 의원

(5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

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 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 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 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5호 중 "국무위원·정부위원"을 "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8호 중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를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등의 불응죄) 제1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1조의3(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제121조의2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창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		
략)	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석한 <u>국무위원·정부위원</u>	5 <u>국무위원·정부위원</u>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		
진술인의 성명	<u> </u>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5조(회의록) ① (생 략)	제11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		
	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출석한 <u>국무위원과 정부위원</u>	8국무위원과 정부위원		
<u>의</u> 성명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		
	<u>원의</u>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u>위원은</u>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	<u>원은</u>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 ② 위원회는 의결로 <u>국무총리,</u> <u>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u> 출 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u>국무총리, 국무</u>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30	총리, 국무위원, 정부	부위원	밎
=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의
_			
_			
_			
(2	2	- <u>국무총</u>	리,
2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및 그 밖	의
<u>ネ</u>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u> </u>	
_			
_			
C	3		
_		총리, 국	무
9	위원, 정부위원 및 =	1 밖의	<u>차</u>
<u> </u>	관급 이상 공무원은-		
_			
4	4) ~ ⑤ (현행과 같-	음)	
제1	21조의2(국무위원 -	등의 출	석
<u>3</u>	요구 등의 불응죄) >	세121조기	네 <u>3</u>
<u>ਨ</u> ੋ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	항
<u> </u>	또는 제2항에 따라 칕	출석요구	를
벋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	0]
<u> </u>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	하
<u> </u>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
<u> </u>	천만원 이하의 벌금여] 처한다	<u>}</u> .
제1	21조의3(고발) ① 본	회의 또	는

<신 설>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제121조의2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 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 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 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 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 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 창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